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88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박운기, 성중기, 황준환, 남재경,
김용석(서초), 김경자(양천), 유 용,
주찬식, 남창진, 이명희, 진두생,
강구덕, 김창원, 김혜련, 유 청,
김선갑, 박양숙 의원(17명)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 같은 조례안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조례안 제4조 제3항)
-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조례안 제5조)
-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의 설치 등 (조례안 제7조)

나. 전제

- 1)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2)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수립 시점인 5년마다 1회 실시 전제
- 3)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은 1개소 설치로 가정
- 4) 인건비상승 및 물가상승 등은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발생 예상)

라. 방법

- 1) 실태조사는 5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며, 서울시 '10년~'14년 학술 연구용역비 평균으로 산출
-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의 운영 및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 (※ 센터설치비용은 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5,187,39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세출	실태조사 (제4조의3)	132,398	-	-	-	-	132,398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제7조)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055,000
	소계(b)	1,143,398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187,398
총비용(b-a)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이 철 희
 주 무 관 강 평 선
 ☎ 02-3705-1279, e-mail(kangdan@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예술활동 지원사업 및 교육지원 기관 설치·운영 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 5년마다 1회 실시 (조례안 제4조의 3)

- 총비용 ≙ 132,398천원
 - 연구용역비 : 132,398천원(연간비용)

※ '10년~'14년 서울특별시 학술연구용역비 건당 평균액 참조

(단위 : 천원)

구분	'10년~'14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당 평균액	132,398	174,398	140,620	146,020	134,864	90,851

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운영비 (조례안 제5조, 제7조)

- 총 비 용 ≙ 5,055,0000천원
- 연간비용 : 인건비 및 경상비 ≙ 1,011,000천원
 - 인건비 : 408,000천원
 - 경상비 : 603,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 계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055,000
인건비	408,000	408,000	408,000	408,000	408,000	2,040,000
경상비	603,000	603,000	603,000	603,000	603,000	3,015,000

【참 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민간위탁금 2016년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국고	자체	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	1,000	11	1,011
○ 인건비	408		408
보수	408		408
○ 경상비	592	11	603
일반수용비	82	11	93
공공요금제세	49		49
특근매식비	7		7
임차료	3		3
시설장비유지비	26		26
차량비	6		6
복리후생비	36		36
위탁사업비	337		337
기타운영비	4		4
국내여비	4		4
국외여비	6		6
사업추진비	6		6
기관업무비	1		1
건설비	23		23
자산취득비	2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